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5470 제안연월일: 2024. 11. .

제 안 자 : 행정안전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제안자	제안일	심 사 경 과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김도읍의원 (2200382)	2024.6.12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4.9.2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(24.9.24.) 상정/의결(대안반영폐기)
	이상식의원 (2202025)	2024.7.19.	「국회법」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(24.9.23.)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 사 제2소위(24.9.24.) 상정/의결(대안 반영폐기)
	조은희의원 (2202751)	2024.8.12.	「국회법」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직접 회부(24.9.23.)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 사 제2소위(24.9.24.) 상정/의결(대안 반영폐기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4.9.24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

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9.25.)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,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,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등의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.

또한,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 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, 현행법에는 「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'응급의료정보통신망'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 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, 소방청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 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·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 도 업무를 추가함(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).
- 나.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(안 제22조의2제1항).
- 다.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5 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이송"을 "이송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관련"을 "등을 위한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아·청소년환자(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)에 대한 상담·안내 ·지도

제22조의2의 제목 중 "수집"을 "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"를 "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"으로, "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,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"을 "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"의료기관"을 "의료기관의 장"으로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응급환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
- 2. 주된 증상,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
- ② 소방청장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 10조의2제2항(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)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	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
의 설치·운영 등) ① 소방청장	의 설치·운영 등) ①
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	
자 <u>이송</u>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	<u>이송 등</u> 에
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	
과 시·도 소방본부에 119구급	
상황관리센터(이하 "구급상황	
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	
야 한다.	
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	2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119구급이송 <u>관련</u> 정보망의	4등을 위한
설치 및 관리·운영	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소아·청소년환자(18세 이하
	의 환자를 말한다)에 대한
	<u>상담 • 안내 • 지도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	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
<u>수집</u> )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	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
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	이용) ①
한 경우 <u>이송환자의 수 및 증</u>	

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주된 증상,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환자 이송 정보의</u>
파악 및 응급처치의
해당 의료기관
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
<u>하나에 해당하는</u>
<u>의료기관의 장</u>
,
1. 응급환자의 성명, 연락처, 주
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
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
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정보
<u>2.</u> 주된 증상, 사망여부 및 상
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
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
② 소방청장은 「응급의료에
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
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
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
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(제
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)의
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
보를 요청할 수 있다.